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0. 12. 21.(월) 총5대(본문3, 참고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이호성 • ☎ (044) 201-3358, 3359	
보 도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선정기준)	'21년(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 → '21년 48.0원)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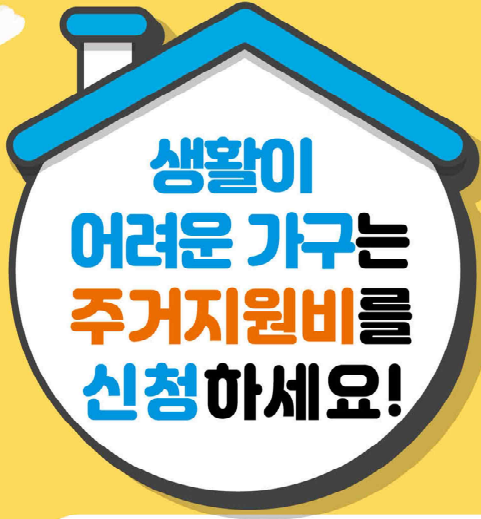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044-201-33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소득·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가구수	임차가구				구분	자가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임/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